

제 3 장 창업실습

제 6 조(창업실습 교육과정) ①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과정은 자유선택 “창업실습1, 2” 교과목으로 개설한다.

③ 지도교수는 창업중점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위원회에서 승인한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할 수 있다.(개정 2022. 3. 1)

④ 교원 1인이 학기당 개설할 수 있는 창업실습 교과목은 3개 분반 이내로 제한한다.

제 7 조(수강신청) 창업실습 교과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인 이상 10인 이내의 팀으로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한다.

2. 창업중점교원 또는 위원회에서 멘토로 지정한 지도교수가 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22. 3. 1)

3. 제반 신청 서류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학기 개시 전 창업지원센터에서 취합하고 교무처에 일괄 수강신청을 요청한다.(개정 2022. 3. 1, 23.11.10)

제 8 조(학점인정) 창업실습 교과목이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사일정상 교과목 운영 종료 후 시작품 등 창업준비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과 지도교수의 종합평가서를 창업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한다.(개정 2022. 3. 1, 23.11.10)

2. 취합된 결과물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교무처에 해당학기의 성적반영을 일괄 요청한다.

제 9 조(이수학점) “창업실습1, 2” 교과목은 각 2학점 2시간으로 한다.

제 10 조(성적평가 및 표기) 창업실습 교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P/NP로 처리하고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에 따른다.